

# 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[www.seoul.go.kr](http://www.seoul.go.kr)

제3714호

2021.9.10.(금)



## 목 차

### ◆ 고 시

제2021-515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 종사자 건강진단(선제검사) 행정명령 ..... 2

## 고 시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515호

###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 종사자 건강진단(선제검사) 행정명령

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코로나-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.

2021년 9월 10일  
서울특별시

1. 적용지역 :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전 지역
2. 검사기간 : '21. 9. 10.(금) ~ '21. 9. 17.(금) (8일간)
3. 처분대상 :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종사자  
 ※ 유통종사자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도·소매권역에 종사하는 모든 자  
 [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(횟수, 완료여부)와 관계없이 검사]
4. 처분내용  
 -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모든 유통종사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건강진단(선제검사)을 받을 것
5. 처분사유 :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도매시장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 필요
6. 처분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제3호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3. 건강진단, 시체 검안 및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

7. 효력발생 시점 : 고시 즉시 효력 발생

8. 검사장소 :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선별진료소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, 임시선별검사소, 찾아가는 선별검사소
9. 검사비 : 무료
10. 위반에 따른 벌칙 등
- 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,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11. 불복절차 등
- 이 행정명령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  - 처분문서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  - ※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생략
12. 문의처 : 120 다산콜센터(담당부서 :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)

- 안전한 서울 • 따뜻한 서울
- 꿈꾸는 서울 • 숨쉬는 서울



|       |  |
|-------|--|
| 기관의 장 |  |
| 선     |  |
| 람     |  |

|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공<br>람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